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42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0164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기금의 주택계정 용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을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2

I.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0164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보증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3. 검토의견

가. 기금의 주택계정 용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을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가. (생략) 나. <u>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u> 구입·임차 또는 개량 다. ~ 차. (생략)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9조(기금의 용도)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u>주택의</u> ----- 다. ~ 차.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용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를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계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도시계정’으로 구분됨(제4조, 제9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¹⁾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준주택의 건설,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용자 등을 ‘주택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1)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용자
 - 가. 국민주택의 건설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다. 준주택의 건설
 -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용자
 -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마. 삭제 <2017. 8. 9.>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용자
6.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국민주택규모²⁾’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³⁾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함.

한편,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3년 대비 20만 6,500명 감소한 2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3년도 합계출산율⁴⁾은 0.72명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2)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2013년 ~ 2023년)]

(단위: 천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출생아 수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2	230.0
전년 대비	증 감	-48.1	-1.0	3.0	-32.2	-48.5	-30.9	-24.1	-30.3	-11.8	-11.4	-19.2
	증 감 률	-9.9	-0.2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합계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전년 대비	증 감	-0.11	0.02	0.03	-0.07	-0.12	-0.08	-0.06	-0.08	-0.03	-0.03	-0.06
	증 감 률	-8.5	1.5	2.8	-5.4	-10.2	-7.1	-6.0	-8.9	-3.4	-3.7	-7.3

※ 자료: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4. 2., 재구성

이러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출산가구 주택공급, ② 출산가구 금융지원, ③ 청약제도 개선이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임.

특히,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전세자금)을 도입하여 시행(2024. 1. 29.)하였는데, 구입자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⁵⁾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함.

[기존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구분	구입자금		전세자금	
	일반(디딤돌)	신생아 특례	일반(버팀목)	신생아 특례
신청 대상	· 부부합산 0.6억원 ↓ ※ (신혼부부) 부부합산 8.5천만원 ↓ · 순자산 4.69억원 ↓	· 부부합산 1.3억원 ↓ · 순자산 4.69억원 ↓ · 2년 내 출산가구 [무주택자(신규), 1주택자(대환)]	· 부부합산 0.5억원 ↓ ※ (신혼부부) 부부합산 0.75억원 ↓ · 순자산 3.45억원 ↓	· 부부합산 1.3억원 ↓ · 순자산 3.45억원 ↓ · 2년 내 출산가구 [무주택자(신규, 대환)]
대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 ※ (신혼부부) 6억원 ↓	· 주택가격 9억원 ↓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 (신혼부부) 4억원 ↓, 지방 3억원 ↓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대출 한도	· 2.5억원 (DTI 60%, LTV 70%) ※ (신혼부부) 4억원 (DTI 60%, LTV 80%)	· 5억원 (DTI 60%, LTV 70%)	·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 (신혼부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대출 금리	· 2.45% ~ 3.55% ※ (신혼부부) 2.15% ~ 3.25%	· 1.6% ~ 3.3%	· 2.1% ~ 2.9% ※ (신혼부부) 1.5% ~ 2.7%	· 1.1% ~ 3%

주)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전세자금)의 대상 소득요건은 완화(13천만원 ↓ → 20천만원 ↓) 예정(2024. 4. 국토교통부 발표)이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동 대출의 대상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 3년간)할 예정(2024.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임.

※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1차)」(2024. 2.)을 토대로 재구성

이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대출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및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에 비해 소득요건 등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신생

5) 2024년 4월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전세자금)의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1.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전세자금)의 대상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이하, 3년간)한다고 발표함.

아 특례 대출의 주택면적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주택면적 요건과 동일함.

이는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주택계정’의 용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 또는 용자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중 대표적인 전용면적 84㎡의 주택은 통상 방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전용면적 84㎡의 주택이 적절할 수 있지만, 자녀의 수와 성장에 따라 그에 맞는 방의 개수가 필요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용면적 84㎡의 주택보다 넓은 주택이 요구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주택) 정책 연구에서도 자녀 양육에는 적절한 주택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택의 크기는 추가출산의 결심과 시기에 영향⁶⁾을 주며, 양육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방의 수가 증가하기를 희망⁷⁾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면적 요건의 제한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신생아 특

6) 정소이 등, 「저출산 대응 주택 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0, p.124 참조

7) 김지혜 등,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19, p.84 참조

레 대출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주택 도시기금을 국민주택규모에 관계 없이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은 주로 청약저축, 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고, 지출에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비 비중이 높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청약은 과거(2019년 ~ 2021년) 대비순조성이 9.8조원, 채권은 과거 대비 순조성이 3.3조원 감소하였음.

[주택도시기금 청약·채권 수입 현황(2019년 ~ 2023년)]

(단위: 조원)

구분	청약(차입금)					구분	채권(차입금)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적립(a)	16.2	21.2	23.1	18.3	15.0	발행(a)	15.4	18.7	18.8	14.4	13.4
해지(b)	12.2	10.1	10.3	19.0	15.2	상환(b)	12.3	16.2	15.5	14.4	13.9
순조성(a-b)	4.0	11.1	12.9	△0.7	△0.2	순조성(a-b)	3.2	2.5	3.3	△0.0	△0.5

※ 자료: 국토교통부

이처럼, 최근 2년간 청약, 채권의 순조성액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책 요구 증가에 따라 높은 수준의 사업비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연말 여유자금 잔액⁸⁾은 2019년 36.8조원에서 2023년 19.2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현황(2019년 ~ 2023년)]

(단위: 조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구입·전세대출	기금재원	9.4	9.9	10.3	8.5	11.3
	이차보전 (은행재원)	0.2 (13.7)	0.3 (9.0)	0.4 (8.6)	0.5 (12.5)	0.9 (35.7)
	소계	9.6	10.2	10.7	9.0	12.2
	(대출규모)	(23.1)	(18.9)	(18.9)	(21.0)	(47.0)
사업자용자		12.2	10.9	14.3	14.3	10.1
임대주택 출자		3.9	4.4	5.1	5.0	4.2
도시재생		0.6	0.9	0.8	0.6	0.9
기타		0.4	0.3	0.7	0.3	0.7
합계		26.7	26.7	31.6	29.2	28.1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면적 완화를 통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지원 확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여건상 대출 규모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점, 무주택 서민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입장임.

8) 최근 5년간 연말 여유자금 잔액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 36.8조원('19) → 41.3조원('20) → 49.0조원('21) → 28.7조원('22) → 19.2조원('23)

그런데, 통계청의 출산순위별 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국의 출생아 50만 9,748명 중 셋째 아이는 3만 6,423명(7.15%), 넷째 아이는 5,315명(1.04%), 다섯째 이상 아이는 1,390명(0.27%)으로,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셋째 이상 아이의 출생 수는 적은 수준(4만 3,128명, 8.46%)임.

[출산순위별 출생 현황(2021년 ~ 2022년)]

(단위: 명)

구분	총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미상
2021년	260,562	145,039	92,521	19,383	2,828	702	89
2022년	249,186	144,951	83,933	17,040	2,487	688	87
계	509,748	289,990	176,454	36,423	5,315	1,390	176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출생 - 시도_성_모의 연령(5세 계급)_출산순위별 출생' 재구성

즉, 위의 통계와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 요건 중 하나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요건⁹⁾을 종합하면, 2년간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한 최대 4만 3,128가구¹⁰⁾가 개정안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¹¹⁾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¹²⁾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주택은 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대상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대출 실수

9) 구입자금: 무주택 세대주(신규), 1주택자(대환) / 전세자금: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환)

10) '셋째 이상 아이 출산가구의 수(최대 4만 3,128가구)'는 통계청의 '출산순위별 출생' 자료 중 2년간(2021년~2022년) 출생한 셋째 이상 아이의 수를 합계(4만 3,128명)한 것으로서, 연년생, 쌍둥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셋째 이상 아이의 출산가구 수'는 4만 3,128가구보다 적어짐.

11) '셋째 이상 아이의 출생 수' 통계는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산출되었으므로, '셋째 이상 아이 출생가구의 수'는 신규 대출(구입·전세자금) 및 대환 대출(1주택자 구입자금)에 대한 실수요자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음.

요는 4만 3,128가구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물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액을 면밀하게 추산한다면 주택면적 요건 완화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산 결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 완화 요건에 예컨대, 자녀의 수를 4명 또는 5명 이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¹²⁾하였고,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수석비서관을 임명(2024. 7. 25.)하여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음.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에서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임을 밝혔음.

1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2024. 7. 1.

따라서, ①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대출 신청이 어려운 점, ② 개정안에 따른 대출 실수요는 4만 3,128 가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개정안의 취지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 국민주택¹³⁾은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 고려시 평균적인 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주택면적 확대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 취지에 어긋나고,

② 그간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국토교통부)과 보금자리론(금융위원회)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분담해 왔는데, 2016년 제도개편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리’ 용자, 보금자리론은 ‘중산층·실수요자’에 ‘시장금리 수준’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13)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주택면적 완화를 통한 지원 확대는 과도한 재정 소요와 가계부채 영향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0